

의안번호	제245호
의결 연월일	2011년 11월 일 (제305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11월 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5
----------	-----

제출연월일 : 2011년 11월 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정비전과 연계된 팀 신설, 여성부서, 복지 분야의 인력보강,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928명 → 2,964명 (증36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34명 → 1,470명 (증36명)

-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 별표3)

총 계	2,928명	→	<u>2,964명</u> (증 36명)
· 일반직	1,099명	→	<u>1,135명</u> (증 36명)
- 2~3급	1명		1명 (변동없음)
- 3급	8명	→	8명 (변동없음)
- 3~4급	1명		1명 (변동없음)
- 4급	59명	→	60명 (증 1명)
- 5급 이하	1,030명	→	1,065명 (증 35명)

※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기능직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2,928명”을 “2,9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4명”을 “1,470명”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종류별”을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2,964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135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60	40	7	4	7	2
5급이하소계	1,065	-				
별 정 직 계	20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19	-				
연 구 직 계	139	-				
연 구 관	22	1		19	2	
연 구 사	117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382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72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2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2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34명</p> <p>2~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70명</p> <p>2~3. (현행과 같음)</p> <p>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0명</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지방공무원종류별</u>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지방공무원 종류별</u>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u>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하생략)</p>	<p>제4조(직급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u>,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현행과 같음)</p>
<p>제5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u>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u>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u>2,928</u>					
∴	∴					
일반직계	<u>1,099</u>	-				
∴	∴					
4급	<u>59</u>	7	4	6	1	
5급이하	<u>1,030</u>	-				
∴	∴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u>2,964</u>					
∴	∴					
일반직계	<u>1,135</u>	-				
∴	∴					
4급	<u>60</u>	7	4	7	2	
5급이하	<u>1,065</u>	-				
∴	∴					
∴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변동 : 총정원 2,928명 ⇒ 2,964명 (증36명)
 - 일반직 +36명 : 4급 +1명, 5급이하 +35명

2. 비용추계결과

구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 고
총 계	1,943,572,010원	
○ 인건비	1,511,847,010	
- 기본급	1,136,295,600	
- 수 당	235,431,790	
- 정액급식비	56,160,000	
- 명절휴가비	56,814,780	
- 연가보상비	27,144,840	
○ 물건비	70,500,000	
- 직무수행경비	70,500,000	
○ 이전경비	361,225,000	
- 성과상여금	76,316,000	
- 연금부담금	103,784,000	
- 보전금	106,850,000	
- 퇴직수당부담금	34,573,000	
- 국민건강보험금	39,702,000	